

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(재일 97-2)

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법원보관금 이자율을 인상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연 0.35%의 이자를 지급함(제3조제2항)

3. 법원보관금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(재일 97-2)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(재일 97-2) 일부개정예규안

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(재일 97-2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연 0.1%”를 “연 0.35%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취급점의 지정 등)	제13조(취급점의 지정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각 법원별 취급 점에 예탁 된 보관금에 대하여 는 연 0.1%의 이자를 지급한다. 다만, 기간입찰에서 반환되는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하여는 이 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 ----- -- 연 0.35%-----. ----, ----- ----- 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580